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 통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귀하(귀사)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열람 내역 통지 대상자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열람 신청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임대한 주택 (상가)의 주소										
열람 시기	년 월 일										
열람한 사항	1. 임대인의 체납액 2. 임대인의 미납국세 ① 국세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②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table><tr><td colspan="2">①</td><td>②</td></tr><tr><td colspan="2">미납</td><td>체납</td></tr><tr><td>(법정신고기한)</td><td>(납부고지서 발급)</td><td>(지정납부기한)</td></tr></table>			①		②	미납		체납	(법정신고기한)	(납부고지서 발급)
①		②									
미납		체납									
(법정신고기한)	(납부고지서 발급)	(지정납부기한)									

발신명의

이 통지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귀하(임대인)의 동의 없이 귀하의 미납국세 및 체납액을 열람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